예금자보호안내

1. 고객 여러분의 예금은 대부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o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여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하여 줍니다.

2.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입니다.
o 예금보험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예금보험료만으로 재원이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합니다.

3.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은 6 개 금융기관입니다.
o 은행(농• 수협중앙회 포함, 농• 수협 단위조합 제외)•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2003 년말까지만 보호되었고, 2004 년부터는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되며, 농• 수협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4. 보호되는 고객예탁금
o 위탁자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KOSDAQ50 선물은제외)•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개설담보금• 신용공 여담보금 등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를 위하여 고객이 예탁한 현금잔액.
– 저축자 예수금
일반적립식증권저축• 장기증권저축•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세금우대적립식증권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 근로자증권저축 • 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증권저축 등 증권 저축 계좌의 현금잔액.

5.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

o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청약자예수금, 증권사 발행채권, 유통금융대주담보금, 98 년 7 월 24 일 이전의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제세금예수금

※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위탁자(투신사), 수탁자(수탁은행), 수익자(고객)의 3 당사자로서 이들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증권거래를 합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인 증권회사를 통해서 수익증권을 매입한 고객의 경우에도 고객이 투자한 신탁재산은 수탁은행의 별도계정을 통하여 관리되므로 특별히 투자자를 보호하는 보호규정이나 기구는 없지만 위탁자(투신사)의 파산과는 관계없이 고객의 자산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수탁은행의 고유재산과는 별도로 관리되는 신탁 재산을 통하여 관리되므로 신탁자산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어 고객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6. 보호금액한도

o ※ 2001 년 1 월 1 일부터 예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고 5 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o ※ 2008 년 11 월 3 일부터 은행의 외화예금도 개별 금융회사별 예금자 1 인당 5 천만원(원화예금 포함)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 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결정한 이자 중 액수가 적은 금액

※ 2001 년 1 월 1 일부터 정부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기관)이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호상품 및 비보호상품 현황>

(2008. 11. 3 현재)

구분	보호 상품	비보호 상품
증권회사	증권저축, 위탁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등의 현금 잔액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o 유가증권,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발행채권 o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은행	o	o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구분	보호 상품	비보호 상품
	보통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o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 예금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및 표지어음	은행발행채권 o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신탁 및 개발신탁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o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보험회사	o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종합 금융회사	o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o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종금사발행채권, 매출어음
상호 저축은행	o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고객콜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1544-7004)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아래 : 보호금융상품의 목록

금융기관명 : 리딩투자증권㈜

(기준일 : 2008.4.1)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보험계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래

1. 보호금융상품의 목록

1) 위탁자예수금 현금잔액분만 보호대상
2) 저축자예수금 : 현금잔액분만 보호대상
(1) 근로자장기증권저축
(2)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3) 세금우대증권저축
(4) 일반적립식증권저축
(5) 장기증권저축
3) 신용거래계좌개설담보금 : 현금잔액분만 보호대상
4) 신용공여담보금 : 현금잔액분만 보호대상

5) 수익자예수금 : 현금잔액분만 보호대상

6) 기타(해외)예수금 : 현금잔액분 보호(외화)

첨부 2

2.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변동내역

1) 삭제 금융상품 목록

번호	금융상품명	삭제일	삭제사유
	해당상항없음		

2) 신규기재 금융상품 목록

번호	금융상품명	관련조항 및 상품특징	판매일
	해상사항 없음		

주) 예금보험관계규정 제 4 조 제 1 항 또는 제 5 조 제 1 항 몇호에 표시

3) 판매후 삭제되 금융상품 목록

번호	금융상품명	관련조항 및 상품특징	판매일
	해당사항 없음		